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3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권영진 · 이만희
안철수 · 윤한홍 · 서천호
이종배 · 김재섭 · 이상휘
박성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.

그러나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며,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11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의3제1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1조의3(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) 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공급하는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(이하 이 조에서 “부탄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.	제111조의3(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⑩ (생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